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8. 10 선고 2020가단13490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

피 고 1. B

2. C

3. D

변 론 종 결 2021. 6. 15.

판 결 선 고 2021. 8. 10.

주 문

1. 피고 B은 원고에게 4,530,577원 및 그 중 1,835,470원에 대하여 2020. 6. 2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.89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별지 목록 제1,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/17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9. 5. 29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나. 피고 D은 피고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별지 목록 제3,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/17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9. 5. 29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나. 피고 C은 피고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5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피고 B에 대한 청구

가. 인정사실

- 1) E 주식회사는 2015. 12. 7. 피고 B에게 200만 원을 계약만료일 2018. 7. 10.,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34.894%로 정하여 대여해주었다.
- 2) 이후 E 주식회사는 2016. 12. 30. F 주식회사에게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, 2017. 1. 3.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.
- 3) 이후 F 주식회사는 2018. 10. 26.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, 원고는 채권양도통지 사무를 위임받아 2018. 11. 28.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.
- 4) 위 대여금채권은 2020. 6. 26. 기준으로 대여원리금은 4,530,577원(=대여원금 1,835,470원 + 인수전 이자 1,600,294원 + 인수후 이자 1,094,813원)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5 내지 7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나. 결론

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양수금 4,530,577원 및 그 중 원금 1,835,47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20. 6. 2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4.89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,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.

2. 피고 C, D에 대한 청구

가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나. 적용법조

1) 피고 C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 2) 피고 D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
판사 반정모

별지